

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
지원 조례안
(양순임 의원 대표발의)

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

(양순임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38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5년 2월 28일

발의자 : 강수진, 경수현, 권영애, 김육영,
박영섭, 소형준, 양순임, 오중균,
이용진, 이호건, 임태근, 정기혁,
정병기, 정윤주, 정해숙, 진선아

1. 제안이유

이 조례는 우리 민족의 고유 의상인 한복을 즐겨 입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통문화의 계승·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해 제안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(안 제1조)
- 나. 정의(안 제2조)
- 다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라. 한복입기 권장(안 제5조)
- 마. 한복의 날 지정(안 제6조)
- 바. 활성화 및 지원(안 제8조)
- 사. 한복입는 자의 우대(안 제9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전통문화산업 진흥법」

나. 예산조치 :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필요시 조치

다. 부서협의 : 문화체육과

라. 입법예고 : 2025. 3. 6. ~ 2025. 3. 12.

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우리 민족의 고유 의상인 한복을 즐겨 입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통문화의 계승·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한복”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으로서 보편적으로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,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등을 입은 전통복식을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개발·추진하고, 그 활동을 권장·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한복입기 권장)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관내의 기관 및 단체·기업 등에 한복입기를 권장할 수 있다.

제6조(한복의 날 지정) 구청장은 한복입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 한복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.

제7조(고유명절 및 주요행사) 구청장은 설날, 추석, 정월대보름 등 고유명절과 국경일 등의 주요행사에 성북구민이 한복을 더 많이 입을 수

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제8조(활성화 및 지원) ① 구청장은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하여 한복입기 활성화 시책과 보급에 관한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한복입는 자의 우대) ① 구청장은 한복을 입은 사람이 고유명절·국경일 및 구 한복의 날 지정일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에 구가 설치·운영하는 공연·전시 또는 문화·유적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입장료, 관람료 및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범위 및 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0조(표창) 구청장은 한복입기 활성화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단체나 사람을 대상으로 표창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